

#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진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 - 160
----------	---------

발의년월일 : 2023. 3. 13.

발의자 : 최진호 의원 외 3 명

## 1. 개정이유

-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현실화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정수에 관한 사항 조정 (안 제6조)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른 정비 (안 제7조)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8조)
- 사무국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0조)
-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2조)
- 주민자치회의 연수·세미나 또는 워크숍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1조)
- 운영세칙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5조)

##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5. 관계법령 등 발췌서 : 붙임3

## 6. 예산수반사항 : 붙임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7. 입법예고 (결과) : 붙임 5 (의견 있음)

- 입법예고 : 2023. 3. 6. ~ 3. 13. (7일간)

## 8.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6
- 부서의견 : 붙임7 (부서의견 반영)

## 붙임1 일부개정조례안

#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주민” 을 “주민” 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15세” 를 “15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 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 포함 5명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동장이 추천하는 자 1명

2.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3.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1명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

2.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 선정 방법 및 심사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동 별 상황에 맞게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7조의2에 따른 선정위원회에서 모집인원의 150퍼센트 이내까지 사전심사를 통해 선발한 자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전 이수하거나, 위촉 후 6개월 안에 반드시” 를 “사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자치회는” 을 “선정위원회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자치회는” 을 “동장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 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간사 또는 사무국)” 을 “(사무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 을 “사무 국” 으로, “있다” 를 “있으며,”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 를 “주 민자치회 위원 중 사무국장을 선임할 수 있고, 필요” 로, “간사를” 을 “사무국 장을”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을 “제2항 에 따른” 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6조의 위원과 분과위원” 을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 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자치회장이 소집” 을 “소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분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세 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 중 “정한다” 를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시 의 원	최진호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72)
안		
자		

##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u>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주민</u> 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 4. (생 략)	제3조(운영원칙) ----- -----. 1. <u>주민</u> ----- -----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u>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0명 이하로 구성한다.(위원 50명 이내, 분과위원 250명 이내)</u>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u>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u>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공개 모집한 날 현재 <u>만15세</u>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 3. (생 략) <u>4. 제8조에 따른 위원 선정위원회 위원</u> 5. (생 략) ③ · ④ (생 략)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 <u>15세</u>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7조의2(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 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 포함 5명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동장이 추천하는 자 1명
  2.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3.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1명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
  2.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④ 제3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 선정 방법 및 심사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상황에 맞게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제8항에 따른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결격사유 심사를 거친 자 중 150퍼센트 이내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8시간을 사전 이수하거나, 위촉 후 6개월 안에 반드시 이수해야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7조의2에 따른 선정위원회에서 모집인원의 150퍼센트 이내까지 사전심사를 통해 선발한 자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

② ——————  
—————  
————— 사전 —————.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5명 이내의 자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자로 선정 하되, 그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 ⑦ (생 략)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동장 포함 5인 이내의 위원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며, 선정위원회는 공정한 심사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상황에 맞게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⑩ (생략)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는 \_\_\_\_\_

④ 동장은 -----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 <삭 제>

⑧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10조(사무국) ① -----  
----- 사무국 -----  
-----  
-----  
있으며, -----  
-----

② ----- 주민자치회 위원 중 사무  
국장을 선임할 수 있고, 필요 -----  
----- 사무국장을 -----  
-----

### ③ (생략)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자체 재원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분과위원회는 제6조의 위원과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③ · ④ (생략)

### 제15조(운영) ① (생략)

②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자치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③ ~ ⑤ (생략)

## <신 설>

## ⑥ (생략)

### 제21조(시의 지원) ① ~ ⑦ (생략)

<신설>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2항에 따른 -----  
-----  
-----  
-----  
-----  
-----  
-----  
-----

제12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

③ · ④ (현행과 같음)

### 제15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집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주민자치회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분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1조(시의 지원) ① ~ ⑦ (현행과  
같음)

#### 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

회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  
수·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  
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  
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운영세칙) -----  
-----  
-----  
-----  
-----  
-----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9-160호
----------	---------

제안년월일 : 2023. 6. 8.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 수정이유

- 주민자치회 정수 및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함.

### □ 주요골자

- 주민자치회 정수의 조정 (안 제6조)
-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조정 (안 제7조의2)
- 주민자치회 사전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조정 (안 제8조)

#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중 “**20명 이상 40명**”을 “**15명 이상 50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세**”를 “**만15세**”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해당 동**”을 “**주민자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전**”을 “**사전 이수하거나, 위촉 후 6개월 안에 반드시**”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0명 이하로 구성한다.(위원 50명 이내, 분과위원 250명 이내)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 ----- <b>15명 이상 50명</b>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공개 모집한 날 현재 <u>만15세</u>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 <u>15세</u> ----- -----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 <b>만15세</b> ----- ----- ----.
1. ~ 4.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 ----- ----- -.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 ----- ----- ----- -.
1. ~ 3. (생 략) <u>4. 제8조에 따른 위원 선정 위원회 위원</u> 5. (생 략) ③ · ④ (생 략) <u>&lt;신 설&gt;</u>	1. ~ 3. (현행과 같음) <b>&lt;삭 제&gt;</b>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동 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의2(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① ----- ----- ----- <b>주민자치회</b> ----- ----- -----.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② 선정위원회는 동장 포함 5명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p> <p><u>1. 동장이 추천하는 자 1명</u></p> <p>2.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p> <p><u>3.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1명</u></p> <p>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p> <p>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p> <p>2.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p> <p>3. 공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p> <p>④ 제3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 선정 방법 및 심사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상황에 맞게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② -----</p> <p>-----</p> <p>-----</p> <p>-----</p> <p>-----</p> <p><u>&lt;삭 제&gt;</u></p> <p>1. (개정안 제2호와 같음)</p> <p>2. ----- <u>2명</u></p> <p>③ · ④ (개정안과 같음)</p>
<u>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제8항에 따른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결격 사유 심사를 거친 자 중 150페센트 이내에서 공개추첨으로 선</u>	<u>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7조의2에 따른 선정위원회에서 모집인원의 150퍼센트 이내까지 사전심사 를 통해 선발한 자 중, 공개추첨</u>	<u>제8조(위원의 선정) ① (개정안과 같음)</u>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으로 선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8시간을 사전 이수하거나, 위촉 후 6개월 안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② ----- 사전 -----.	② ----- 사전 이수하거나, 위촉 후 6개월 안에 반드시 -----.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5명 이내의 자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자로 선정하되, 그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	③ ~ ⑧ (개정안과 같음)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동장 포함 5인 이내의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선정위원회는 공정한 심사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삭 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상황에 맞게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u>&lt;삭 제&gt;</u>	
⑩ (생략)	<u>⑧ (현행 제10항과 같음)</u>	